

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
(일반병의원 · 한의원 공통)

(앞쪽)

1. 기본사항						
①사업자등록번호			②상호		③성명	
④생년월일			⑤병과		⑥업종코드	
사업장 시설	⑦진료실 ()㎡		인원 현황	⑫고용의사 ()명		
	⑧수술실 ()㎡			⑬외래의사 ()명		
	⑨병실 ()㎡	⑩병상 ()개		⑭간호사 ()명		
	⑪대기실외 ()㎡			⑮기타 ()명		

2.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(단위 : 원)							
구분	당해과세기간						
	⑩합계	⑪비보험	⑫건강보험	⑬손해보험 공제조합등	⑭의료급여	⑮사업용 유형자산양도	⑯기타수입
⑰합계 (⑱-⑲+⑳)							
⑳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							
㉑직전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							
㉒해당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							

3. 의약품(한약재) 등 사용검토 (단위 : 원)				
구분	㉓전기이월액	해당과세기간		㉔차기이월액
		㉕매입액	㉖사용액	
㉗치료의약품				
㉘의료소모품				

4. 마취제 취급량 (단위 : 원, ml)									
종류	전기이월		해당과세기간					차기이월	
	㉙용량	㉚금액	㉛용량	㉜금액	㉝마취건수 (건)	사용(지급)금액		㉞용량	㉟금액
㊱국부마취제						㉞용량	㉟금액	㊲용량	㊳금액
㊴전신마취제									
㊵출장마취비									

()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약품 등 사용액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자 (서명 또는 인)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,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작성대상 :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하며 수의사는 제외됩니다.

2. 기본사항
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종사인원 현황을 작성합니다.

※ 사업장시설은 반드시 ㎡(병상은 개수)로 적습니다.

※ 한의원은 고용의사란에 "한의사"를, 외래의사란에 "약제사"를 적습니다.

3.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

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을 비보험, 건강보험, 손해보험·공제조합, 외료급여, 기타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고, 정산내역별 수입금액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(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)으로 작성합니다.

②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 「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」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.

③손해보험·공제조합 등의 작성방법도 이와 같습니다

④의료급여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되는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
⑤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란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.

⑥기타수입란은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적습니다.

⑦해당과세기간수령금액은 「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」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습니다.

⑧직전과세기간진료분수령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(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액)을 적습니다.

⑨해당과세기간진료분미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과 당기에 기수령한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4. 의약품(한약재) 등 사용검토

⑩치료의약품에는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(마취제를 포함합니다) 가액을 적고, 그 중에 특히 마취제에 대해서도 ⑫및 ⑬란에 별도로 적습니다.

5. 마취제 취급량

마취제의 매입금액·사용(지급)금액 등을 적고, 출장마취비는 용량과 지급액을 적습니다.